

교원인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가 설치·경영하는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의 교원의 인사관리·인사조직의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 및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며,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구분) ① 본교의 교원은 전임교원(정년계열, 비정년계열)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외국인 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정년계열 또는 비정년계열의 명칭은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1.5.><개정 2019.1.23.>

③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전임교수, 강의전담교수, 연구중심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로 구분한다.<개정 2019.1.23.>

④ 비전임교원은 특수신분교원으로 외국인전임교수,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외래교수, 초빙교수, 특임교수 등을 말한다.<신설 2019.1.23.>

⑤ 교원 중 정년계열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에 대해서는 처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9.1.23.>

제4조(소속) 교원은 우리대학교의 각 학과(부) 및 각 대학원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겸직) 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19.1.23.>

② 교원은 타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교원이 타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와 타 기관에 전임직이 아닌직에 위촉을 수락하는 경우 또는 진학,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초 1개월 전에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3.><개정 2021.2.8.>

③ <삭제 2021.2.8.>

제6조(복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다.

제7조(인사기록과 통계) ① 총장은 교원의 인사기록을 교학지원처에서 작성 보관하게 한다.

② 총장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8조(임용기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정년으로 인한 퇴직의 시기는 정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② 임용기간 중의 휴직기간(신체, 정신상의 사유로 휴직하는 기간은 제외)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26.>

제9조(명예·희망퇴직) 재직 중인 교원이 정년 전에 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희망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1.23.><개정 2021.8.27.>

제10조(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며,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교원업적평가위원회) 교원의 재임용, 승진 등을 위한 업적의 심사와 연도별 교원의 업적평가를 위해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두며,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12조(총원계획) ① 교원의 총원계획은 교수의 정·현원과 중·단기 학사운영계획을 기초로 강의담당 시간수와 교육과정운영 및 기타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 조교는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신규채용분야, 채용과목 및 채용인원은 소속 학부(전공) 교수들의 협의를 거쳐 교학지원처장과 기획조정처장의 합의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단, 교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9.25.><개정 2019.1.23.>

③ 총장은 결정된 신규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직급, 연봉총액 등을 첨부한 총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9.1.23.>

제13조(임용원칙) ① 신규 임용 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에 의거 계약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의 교육목적과 직결되거나 업적이 탁월하여 본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③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규교원 임용세칙 및 교원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인사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된 교원이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5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제14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수업 및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학기 개시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임용공고) 교원의 신규임용은 접수마감일 15일 이상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단, 특별채용의 경우 공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제출서류 및 전형방법) 제출서류 및 전형방법은 교원신규임용세칙에 의한다.

제17조(임용절차) ① 교원의 채용은 신규교원 임용세칙에 의거 채용대상자를 선발하여 복수로 총장은 이사장에게 제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신규임용은 신원조회를 끝낸 후 임용한다. 단,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원조회가 끝날 때까지 조건부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신규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 단,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임용과 승진의 경우에 한하며, 재임용·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 등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18조(임용기간) 신규 임용 시 임용기간은 정관에 의한다.

제19조(임용유예) 임용권자는 교원 신규임용예정자가 다른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고용 계약기간 중에 있거나 연구의 계속,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부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유예 신청을 받아 임용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20조(임용취소)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

제21조(임용금지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
 10.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기타 교육법 제77조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② 제①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한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5. 기타 면직사항은 본교 교직원징계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의원면직)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3장 재임용

제24조(재임용시기) 교원의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

제25조(재임용요건) ① 재임용 요건은 교원업적평가규정결과에 의해 6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

② 재임용 교원업적평가는 임용기간 만료일의 직전학기까지의 평가결과로 한다.

③ 제1항을 미충족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재임용 평가를 재심한다. 단, 비정년계열전임교원은 유예기간 없이 당연퇴직한다. <개정 2022.10.26.>

제26조(재임용절차) ① 재임용대상 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한다.

②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에 제청하며, 이사장은 고과평가를 실시하여 임용한다.<개정 2021.8.27>

제27조(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친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개정 2021.8.27>

② 제26조 제2항의 심의과정에서 본인의 희망 또는 재임용 탈락 대상교원에 대하여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제출서류) 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1. 연구업적 목록 | 1부 |
| 2. 연구업적물 | 각 3부 |
| 3. 추천서 | 1부 |
| 4. 교수업적평가조서 | 1부 |

② 전항과 관련된 증빙서류(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임용

제29조(승진시기) ① 교원의 승진은 매년 10월 1일자로 행하고, 당해 년도 8월말을 기준으로 근무연수가 승진연한에 달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3.><개정 2019.10.30.>

② 연구업적이 현저하고, 국가 및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로자에게는 임용기간에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징계의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

제29조의2(교수의 정수) 부교수의 교수 승진은 교수의 정수가 전체 전임 교원의 100분의 30이내의 수로 한다. 다만, 본교 및 학부(전공)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원의 경우 교수의 정수 외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3.>

제30조(승진소요연한) ① 본교의 정년계열전임교원에 대한 직급별 최소 승진 소요연한은 다음과 같다. 단, 2013년 3월 1일 이전 임용된 전임강사는 조교수 임용으로 본다.<개정 2013.12.4.>

1. 조교수에서 부교수 : 6년<개정 2013.12.4.>
2. 부교수에서 교수 : 6년<개정 2013.12.4.>

② 2002년 1월 이후 임용교원의 승진소요연한은 제1항을 준용한다. 단, 계약(근무)누적이 6년 이하인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2004.8>

제31조(승진의 요건) ① 총장은 승진대상교원에 대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 70%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격심의 후 승진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제청을 하여야한다.<개정 2015.1.13.>

② 승진 교원업적평가는 승진신청일 직전학기까지의 평가결과로 한다.

③ 제30조 기간에는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승진임용절차) 승진임용을 위한 업적의 심사절차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3장의 절차에 따른다.

제33조(제출서류) 승진임용심사를 받고자 하는 교원이 제출할 서류는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다.

제34조(승진소요연수 산정) 최초의 승진 소요연수는 본교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제5장 전부(과)·파견

제35조(전부(과)) ① 교원의 전부(과)는 교원의 자격과 능력,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전부(과)를 행할 때에는 해당교원, 해당학과장, 교학지원처장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하거나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원의 전부(과)는 학기시작 30일 이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파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다른 학부(과)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학부(과)의 요청이 정당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부(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
3.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37조(신분보장) 본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및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8조(당연퇴직) 재직 중인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21조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달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제39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개정 2021.2.8.><개정 2021.8.27.>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9.1.23.><개정 2021.2.8.>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개정 2019.1.23.>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9.1.23.><개정 2021.8.27.>
6.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개정 2019.1.23.><개정 2021.2.8.><개정 2021.8.27.>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신설2012.12.21.><개정 2019.1.23.><개정 2021.2.8.>
- 7의 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개정 2021.2.8.>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신설 2019.1.23.><개정 2021.2.8.><개정 2021.8.27.>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신설 2021.8.27.>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신설 2021.8.27.>
11. 그 밖에 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1.8.27.>

제40조(휴직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3.><개정 2021.8.27.>

1.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개정 2019.1.23.>
2. 제3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9.1.23.>
3. 제3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9.1.23.>
4. 제3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9.1.23.>
5. 제3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23.>
6. 제39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9.1.23.><개정 2021.2.8.>
7. 제3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9.1.23.>
8. 제3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8.27.>

9. 제3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8.27.>

② 휴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학기 개시일 60일 전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2.8.>

제41조(휴직자의 신분 및 복직) ① 휴직중인 교원은 휴직기간 중 교원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60일전에 복직원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복직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2.8.>

③ 제39조 제1호에 의한 휴직자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직신청을 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복직신청자의 건강상태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복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9조 제1호,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중인 교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60일전에 복직을 신청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개정 2021.2.8.>

제42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19.1.23.>

② 제39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2, 제8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개정 2021.2.8.>

③ 제39조 7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에 의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23.><개정 2021.2.8.>

제43조(휴직자의 해직)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자동 면직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44조(포상) ①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많은 교원에게 총장은 포상할 수 있다.

② 교직원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직원 포상규정을 따른다.

제45조(징계)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 법령, 정관 및 학교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때
3.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교원징계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징계규정에 의한다.

제4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구분한다.

부 칙(제정 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교직원인사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7. 9.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2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인사규정 중 휴직의 사유, 기간, 처우는 정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019.02.08.

부 칙(2019. 10. 3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승진시기) 중 2019년 이전 임용된자에 한해서 승진은 매년 4월 1일, 10월 1일자로 행한다.

부 칙(2021. 2. 8)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